## [양식 제10호]

⑩제출인

성명

	• •	,																	
	<u>호</u> (	. (	<u>인</u> 년	신	고 월	-	서 일)		*	<ul><li>신고서 작성</li><li>'영표(○)'로</li></ul>					을 참고	<b>!</b> 하고	, 선	택항목어	l)는
	구	분					남	편	(부)				Ó	}	내(	처)			
① 회 한 당 자	성명 한글 한자 본(한자)		*(성) (성)		/ (1				② 또는 서명	*()	성) 성)				① 또는 서명				
			( 0)			 전화					♡ (한자)	7 ( 0)	전화						
사							선목_				-	(인사)			인쇄				
자 ^		생연월																	
신	*주민	]등록	번호					_							-				
고	*등	록기	준지																
인 ~	2	*주소	<u>`</u>																
2	부	니 성I	명 명																
부	주민	등록	번호					_							_				
모	등	록기	존지																
	5	 ! 성!	 명																
양 부 모	주민	등록	번호					_							_				
<u> </u>	등	루기년	즐지																
③외-			 의한 흔	ㄴㅡㅡ 혼인성	립일	자				년	월		일						
	본의									으로 하는 협의			⊣까?		□아니	_			
⑤근:	친혼 '	여부		혼인	당사:	자들	이 8	촌이ι	H의	혈족사이에	해당	됩니까	?	예	□아니	요 🗌			
⑥フ)¹	타사형	}																	
	,	성 명	}							① 또는 서명	] 2	주민등	록번호				-		
7	주 소																		
증 인		성 명	]	① 또는 서명							2	주민등록번호 -							
	;	주 소	, ,																
	ાી જને	부	성명							① 또는 서명		\ <u>\</u>	성명					① 또는	서명
· 동 의	남편	모	성명							① 또는 서명	후	주민등	등록번호				_		
	아내	부	성명							① 또는 서명	- 견 ! ! 인	7	성명					① 또는	서명
		모	성명							① 또는 서명	_	주민등	등록번호				_		
(9)시	고인 (	출선여	겨부						[	l] 남편(부)			2 아내(	처)					

주민등록번호

<sup>※</sup>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	인	구 동 향 조	사						
⑦ 실제 곁	9혼 생활	- 시작일		Ļ	đ	월	일부터 ·	동거	
U) 혼인종류	남편	①초혼 ②사별 최	후 재혼 ③	이혼 후 재혼	-	아내	1 초혼 2 /	·}별 후 재혼 ③	이혼 후 재혼
G 최종	남편	1 학력 없음 2 최	논등학교	③ 중학교		아내	① 학력 없음	2 초등학교	3] 중학교
졸업학교	(부)	4 고등학교 5 대	바학(교)	6 대학원 여	기상	(처)	4 고등학교	5 대학(교)	🗓 대학원 이상
		1 관리직	2 전문직				1 관리직	2 전문직	
		③ 사무직	4 서비스				③ 사무직	4 서비스직	
જી ગોલી	남편	5 판매직	6 농림어역	립		아내	5 판매직	⑥ 농림어업	
라 직업	(부)	7 기능직	8 장치·기	계 조작 및 조	:립	(처)	7 기능직	8 장치·기계	조작 및 조립
		9 단순노무직	10 군인				9 단순노무족	의 <u>10</u> 군인	
		[]] 학생·가사·무직					111 학생·가사·	무직	

<sup>※</sup>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**형법에 의하여 처벌**받을 수 있습니다. **눈표(\*)로 표시한 자료**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<sup>※</sup> 아래 사항은 <u>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.</u> 「통계법」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 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※①,②란 및⑤,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, 나머지 란(③,④,⑥,⑧)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.
- ②란: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③란: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.
- ④란:「민법」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.
- ⑤란:혼인당사자들이「민법」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[8촌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)]을 표시합니다.
- ⑥란: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 -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(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)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
  -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, 등록기준지
- ⑦란: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.
- ⑧란: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⑩란: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※ 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.
- ②란: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.
- 따란: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합니다.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④ 고등학교에 '영표(○)'로 표시
- @라: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- Ⅱ 관리자: 정부, 기업,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, 지휘 및 조정(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)
-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: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(과학, 의료, 복지, 교육, 종교, 법률, 금융, 예술, 스포츠 등)
- ③ 사무종사자 : 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(행정, 경영, 보험, 감사, 상담 안내 통계 등)
- ④ 서비스종사자 : 공공안전, 신변보호, 돌봄, 의료보조, 미용, 혼례 및 장례, 운송, 여가, 조리와 관련된 업무
- ⑤ 판매종사자 :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(인터넷, 상점, 공공장소 등), 상품의 광고·홍보, 계산·정산 등
- ⑥ 농림·어업 숙련 종사자 : 작물의 재배·수확, 동물의 번식·사육, 산림의 경작·개발, 수생 동·식물 번식 및 양식 등
-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, 제품 가공
- 图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: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·조립, 산업용 기계·장비조작, 운송장비의 운전 등
- ⑨ 단순노무 종사자 :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
- 10 군인 : 의무복무를 포함하여,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(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)
- Ⅲ 학생·가사·무직: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, 전업주부이거나,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

## 첨 부 서 류

##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
- 1.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혼인동의서[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,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]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(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)
- 3.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[조정,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(화해)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].
- 4.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.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-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: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(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) 원본 및 국적을 증명 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각 1부
-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: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6. 「민법」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(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) 1부.
- 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-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 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 는 인감증명서)
-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)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\*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(소제기자)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